의 안 번 호 1929 【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2. 3. 24.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4.(목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한영필)

가. 제안이유

O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: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
 - 변경: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
- O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지원신청,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~ 제7조)
- 지급방법,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 ~ 제10조)

다. 근거법규

- ○「국가보훈기본법」
- O 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O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O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O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 국가보훈 기본법 」

[시행 2017. 6. 21.] [법률 제14459호, 2016. 12. 20., 일부개정]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

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 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41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<u>제4조(국가 등의 책무)</u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- 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- 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- 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- 4. 6 · 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[전문개정 2015. 12. 22.]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42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- 제3조(적용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<개정 2011. 8. 4., 2015. 12. 22.>
 - 1.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(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)
 - 2. 특수임무부상자: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(질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 - 3. 특수임무공로자: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[전문개정 2008. 3. 28.]

「5.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39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제2조(예우의 기본 이념)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·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·애족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 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

져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8.]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

제2조(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 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. 〈개정 2015. 12. 22., 2020. 3. 24.〉

- 1. 재해사망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재해부상군경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3. 재해사망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재해부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

46 (제243회-본회의제2차부록)

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1.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
- 2. 사망하거나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
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.
- 1.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
- 2.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
- 3. 장난 ·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(私的)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